

'96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 (National Residue Programme)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5일 「'96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을 고시하였다.

이번 요령은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잔류방지로 위생적인 육류생산 기반 정착, 국민보건향상, 국내산 육류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대상 품목은 도축전 소·돼지와 도축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이고, 검사 대상 물질은 항생물질 5종(페니실린, 암피실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과 합성항균제 2종(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이다.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도축전 생체검사 결과 유해성 물질 잔류(양성)판정시 해당가축은 당일 도축 불합격 조치하고 출하농장에 대하여 특별관리하는 계도검사가 있다. 또한 규제검사로서 특별 관리 농가에서 가축을 다시 출하할 경우 검사완료시까지 출하를 보류한 후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해당 지육을 식용으로 사용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 요령에 의해 올 한해동안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정성검사 및 정밀정량분석이 실시 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정밀 검사 대상물질은 국내 육류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편집자주)

1. 목적

-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잔류경향 분석 및 효율적인 잔류방지 유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 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 육류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

-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증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2. 추진방향

-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시·도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 실시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간이정성시험

및 정밀정량분석 실시

-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정밀검사 대상물질은 국내 육류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3. 사업내용

□검사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특별시·광역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사업기간 : '96. 1~12월

□사업량

단위 : (두·수)

구분/축종	소	돼지	닭	계	비	고
도축시검사	11,000	23,000	11,000	45,000		
도축전검사	10,000	20,000		30,000		

□검사대상

- 대상품목 : (도축시 검사)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도축전 검사) 소·돼지
- 대상물질
 - 간이정성검사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 정밀정량검사 :
 - 항생물질 : 페니실린, 암피실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 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5종)
 - 합성항균제 :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2종)

4. 세부실시요령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진흥원장)는 검사실시기관의 검사능력 및 월별, 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 세

부실시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후 '96. 2. 17일까지 당부에 보고

□검사시료 채취 방법

- 시료채취 장소 :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도계장)
- 시료채취량 :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근육 100g 이상, 정량분석에 필요한 시료량 포함)
- 시료채취방법 : 1농장 1시료(닭의 경우 1수이상) 무작위 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축시 지육검사

- 소, 돼지 : 축산물 검사원은 주간 검사계획에 따라 도축시 검사대상 지육중 무작위로 1% 이상(돼지는 0.2% 이상)을 추출하여 검사시료로 채취
- 닭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축산물 검사원은 월별 계획에 따라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검사시료 채취

- 도축전 생체검사

- 소 : 축산물검사원은 주간 검사계획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된 총두수중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시료 채취
- 돼지 : 축산물검사원은 주간 검사계획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를 농장별로 구분하여 그간 검사받은 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검사대상 농장을 선정하고, 주간 도축물량의 일정비율(0.2% 이상)의 검사시료 채취

□검사방법 및 절차

- 도축시 지육검사(소, 돼지, 닭)
 - EEC-4-plate, TLC 또는 BmDA법을 이용하여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한 간이 정

특별관리 농가에서 가축을 다시 출하할 경우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를 보류한 후

- 우선 간이 정성검사를 실시하며 음성반응을 나타낼 경우 특별관리 및 출고보류를 해제

- 양성 반응을 나타낼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지역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급적 동물원 등 인근 동물사육시설의 사료용으로 활용)

성검사 실시

- 간이 정성검사 결과 유해성물질 잔류(양성) 판정 시료에 대해 미생물 수용체 분석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으로 정량분석 실시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밀정량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축산식품중의 잔류물질 시험방법”에 의거 검사 실시

◦ 도축전 생체검사(소, 돼지)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간이정성검사 실시
- 검사방법 및 절차는 추후 통보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계도검사(Screening test)〉

- 도축전 생체검사 결과 유해성 물질 잔류(양성) 판정시 해당가축은 당일 도축 불합격 조치(검사방법 및 절차는 추후 통보)
- 도축시 지육검사 결과 유해성 물질 잔류(양성) 판정시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등 특별관리 실시
- 특별관리 방법
 - 해당가축 출하농장을 추적
 -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

- 그 원인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해 개선방안을 계도

- 검사결과에는 관계없이 지육은 사전에 출고 조치

〈규제검사(Surveillance test)〉

- 특별관리 농가에서 가축을 다시 출하할 경우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를 보류한 후

- 우선 간이 정성검사를 실시하며 음성반응을 나타낼 경우 특별관리 및 출고보류를 해제

- 양성 반응을 나타낼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지역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급적 동물원 등 인근 동물사육시설의 사료용으로 활용)

□ 검사결과 통보 및 보고 등

- 간이 정성검사결과 유해성물질 잔류(양성) 판정 시료 발생시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축종, 농장 소재지, 축주명 등)
- 간이 정성검사 양성시료는 정밀분석(물질별 정량확인)하여 통계관리 및 매월 보고할 것.
- 시·도지사는 특별관리 대상농장 내역, 특별관

- 리 대상 농장에 대한 검사강화 결과 등을 타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조치
- 특별관리 대상농장에 대한 내역 등이 통보된 경우 당해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해당 농장이 가축을 재출하시 규제검사 실시 등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 해당가축 출하농장 특별관리 실시조치 철저 (대장 작성관리)
 -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당해 농장제도 실시
 -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 도축전 특별관리 대상 여부 확인 철저
 - 검사 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 제한
- 시·도지사는 월별 검사실적(별지 보고서식 1 참조)을 다음달 10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정밀검사결과 포함)
- 시·도지사는 '96 잔류물질검사사업 특별관리 실적(별지 보고서식 2 참조)을 '97. 1. 1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 계도검사결과 잔류 양성축 출하농가에 대한 계도 및 특별관리 강화
 - 도축(계)검사 신청시 출하농가 구입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확인 철저
 - 소의 경우 점진적으로 비표에 의한 출하농가 확인
 - 돼지와 닭의 경우 출하농가 구입선별로 검사신청
 - 특별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전산관리 추진
- 시·도지사는 양축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성물질 잔류방지 대책 지도·홍보 등을 적극 실시토록 할 것.
 - 사육관리 개선지원, 사료첨가제 및 동물약품 남용규제와 가축질병 감소대책 등 병행 추

진

- 잔류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민원야기 방지 철저
 -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수시실시 등 검사능력 배양 및 숙련도 제고방안 지속 강구·추진
 - 검사성적의 기록유지 등 동사업 실시와 관련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철저
 - 검사실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장비의 확보 (지방비)·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5. 기관별 추진하여야 할 사항

- 수의과학연구소(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 각 시·도 검사관계자에 대한 기술교육(항생물질 및 농약 정량검사) 실시
 - 가축위생시험소 잔류물질검사요원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등 정밀검사장비 운용 및 잔류물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기술교육 계획 수립(농업공무원교육원과 사전 협의)
 - 22명×1주×2회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세부계획 수립후 '96. 2. 29일까지 당부에 보고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잔류물질검사 정밀도 확인 실시
 - 목적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된 잔류물질검사 장비운용의 정밀도 확인검사 실시로 검사장비 운영관리 적정 및 검사요원의 자질 향상 도모
 - 확인주관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 실시방법 및 회수 : 무작위 테스트(Blind Test)
 - 확인결과 조치 : 분석방법 지도 및 관리강화